

#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90

2019. 4. 15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 ■ 배경 및 목적

- 최근 기존 건축물의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화재안전 확보 정책은 신축 건축물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필수적이나,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강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급에 따른 법리적 검토와 경제적 부담, 사용상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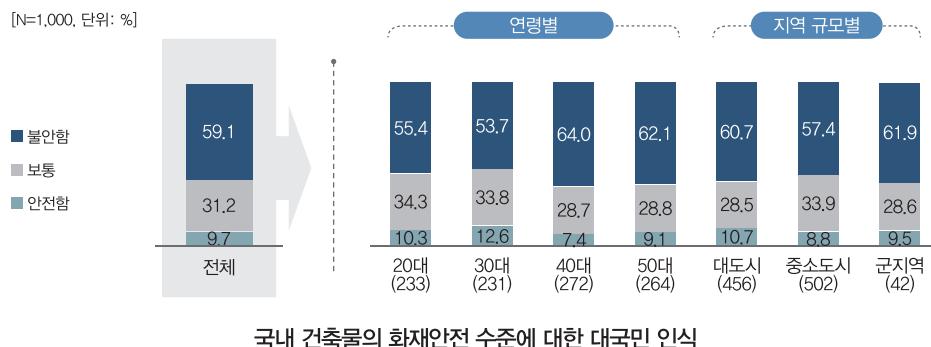
### ■ 정책 추진 방안

- 소급입법의 법리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신뢰보호 방법을 검토하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입법 추진
- 건축물의 사용자 특성과 화재안전성을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높고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보강 대상 건축물 유형을 선정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구체화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등 지역 거점 마련
-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보강될 수 있도록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개선

## 1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정책의 필요성

### ■ 사회적 필요성 :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sup>1)</sup>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내 건축물 화재안전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 (59.1%)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불안전한 이유로는 ‘최근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두려움(22.1%)’이 가장 많았으며, ‘화재에 취약한 설비 및 건축자재 사용(14.2%)’, ‘소방·대피 시설 부족 및 불량·오작동(12.1%)’, ‘부실공사(11.2%)’ 순으로 나타남

국내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불안전한 이유(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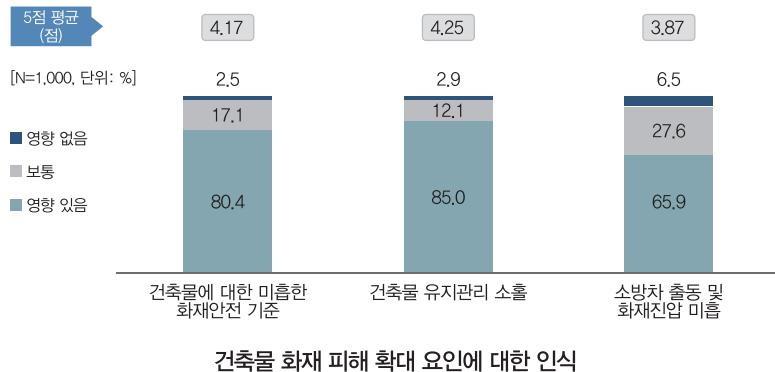
구분	응답 수(건)	비율(%)
전체	1,002	100.0
최근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두려움	221	22.1
화재에 취약한 설비 및 건축자재 사용	142	14.2
소방·대피시설 부족 및 불량·오작동	121	12.1
부실공사(시공)	112	11.2
안전불감증	73	7.3
건물의 노후화	68	6.8
안전점검 및 관리 소홀(비상구 물건 적재·폐쇄 등)	74	7.4
건축물 안전에 관한 법·제도 미흡(허술한 건축허가, 관계자 비리 등)	65	6.5
화재 대피·진압이 어려운 건축물 및 도시 구조(밀집한 건물, 좁은 도로 등)	48	4.8
안전 대책(화재 규칙, 안내 및 요령) 미흡·부재	33	3.3
소방도로 미확보	12	1.2
안전교육 미실시	8	0.8
보안에 대한 인식 부족(아파트 출입자 확인 등)	8	0.8
시민의식 부족(담배꽁초, 이기주의 등)	6	0.6
기타	3	0.3
없음	8	0.8

\*기타 : 소방인력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1), 개인의 실수(1), 지하주차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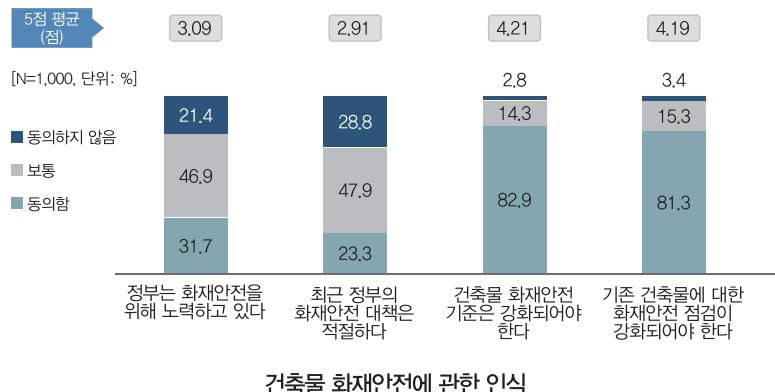
\*모름·무응답은 제외

1) 일반 국민들의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2018년도에 실시한 ‘대국민 화재안전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함(지역, 성별, 연령 등으로 비례 할당된 유효표본 1,000명)

- 건축물 화재 피해 확대 요인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 소홀(4.25점)’과 ‘건축물에 대한 미흡한 화재안전 기준(4.17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응답
  - ‘소방차 출동 및 화재진압 미흡(3.87점)’은 타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 화재 발생 후 대처보다는 화재 발생 전 예방 단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음



-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응답자 10명 중 3명(31.7%)이 ‘정부가 화재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의 화재안전 대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3.3%로 실제 화재안전 대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82.9%)’,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 강화(81.3%)’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



## ■ 법 · 제도적 필요성

- 최근 기존 건축물의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은 신축 건축물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일례로 가연성 외장재의 경우 2010년부터 ‘상업지역 내 균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2,000m<sup>2</sup> 이상 건축물’에 사용을 제한하던 것에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2012)와 의정부 아파트 화재(2015) 이후 사용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는 ‘6층 이상, 높이 22m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이렇게 신축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화재를 살펴보면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물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인식 등 사회적 필요성에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기존 건축물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2 화재안전 관련 제도 현황

### ■ 「건축법」

- 「건축법」에서는 제5장(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조문에서 복도·계단·출입구, 옥상광장, 방화구획, 경계벽·칸막이벽, 내화구조, 방화벽, 마감재료, 지하층 설치 등 화재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운영

화재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li> <li>•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li> <li>•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li> <li>•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li> <li>• 제52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li> <li>• 제53조 지하층</li> </ul>
------	--

#### 「건축법」의 화재안전 관련 조문

- 화재안전 관련 조항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음<sup>2)</sup>

-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의 제2장 ‘건축물의 대지 · 구조 및 건축설비’에는 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제17조), 특수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 및 소화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3조) 등의 조문이 명시되어 있었음
- 「건축법」에서 피난안전 관련 사항이 현행법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1992년 6월 1일 시행된 「건축법」에서부터였으며, 이때 현행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등의 조문으로 정리됨
- 「건축법」 제53조(지하층의 설치) 조문은 방공시설 설치 의무화 요구에 따라 1970년에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 「주택법」

- 「주택법」에서는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계단 · 복도 및 출입구 설치, 배기설비, 경계벽 및 칸막이 설치, 승강기, 복합건축물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건축 · 주택 관계 법령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 종합

구분	1	2	3	4
직통계단설치	●	●		
피난계단설치(특별피난계단)	●	●		
옥외피난계단 설치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설치	●			
관람석 등으로부터 출구 위치	●	●		
건축물 바깥쪽으로 출구 위치	●	●		
옥상광장 등의 설치(헬리포트 설치)	●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방화구획 설치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			
계단 · 복도 및 출입구 설치	●	●		●
거실반자의 설치	●	●		
거실채광 등	●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배연설비				●

2) 유광흠 외(2011), 「건축제도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p.202.

	구분	1	2	3	4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배기설비				●
	거실 등의 방습	●	●		
	경계벽 및 간막이벽 설치	●	●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승강기 등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방화구획의 설치	●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건축물의 내화구조	●	●		
	방화구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지붕·방화문 및 외벽)	●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건축물의 내부마감 재료	●	●		
	난연·불연·준불연재료		●		
지하층	지하층의 구조	●	●		
소방시설					●

1: 건축법, 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출처 : 황은경(2007), “건축물 화재안전 규정간 문제점 도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23(12), p.172.

## ■ 소방 관계 법령

- 2003년 「소방법」이 분법되어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령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기준으로는 소방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이 있음
  - 개별 법령 중에서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의 방염, 소방시설의 종류, 성능 위주 소방설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의 종류와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내부구획 마감재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소방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연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 기준이 운영되고 있음

### 소방 관계 법령에서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

구분	1	2	3
건축허가 등의 동의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소방대상물의 방염	●		
소방시설의 종류(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성능 위주 소방설계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다중이용업의 내부구획		●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기준		●	

구분	1	2	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501A)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화재안전기준(NFSC601) 등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NFSC			

※출처 : 황은경(2007), “건축물 화재안전 규정간 문제점 도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23(12), p.172를 보완

### 3 정책 추진의 주요 이슈

#### ■ 이슈 1 : 법 · 제도적 기반 정비

- 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완공된 경우 사용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음
  - 기존 건축물을 현재의 화재안전성능 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화재안전을 위한 건축물의 성능이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가 많음
  - 당시의 건축법규 및 소방법규의 안전규정이 미비하여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및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 등이 제한적이었음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위험은 건축물 사용 형태가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건축물 화재안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8.1%)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법 ·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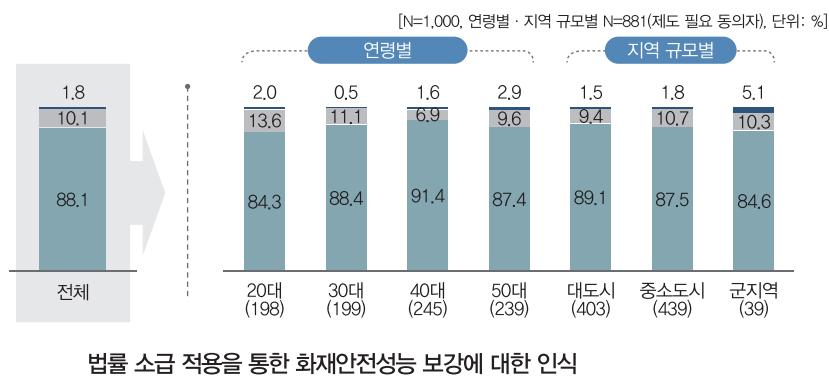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 이슈 2 : 소급입법 및 신뢰보호의 원칙

-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게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사용 중인 건축물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와 형별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을 제한하고 있음
- 새로운 법이 과거의 사실에 적용되더라도 종전의 기본권적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공익상의 이유로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권리의 축소는 개인의 신뢰이익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sup>3)</sup>
  - 즉, 개정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장래를 향하여는’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합헌인 경우에도 ‘이미 과거에 발생한’ 법적 지위에 적용되고 이를 제한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의 관점에서는 위헌적인 법률이 될 우려가 있음
- 소급입법 금지 및 신뢰보호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를 위한 적절한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함<sup>4)</sup>
  - 새로운 법 규범이 비례성 원칙의 요청을 충족하는 결과를 가지게 하여 기본권침해를 완화할 수 있고, 신법을 한정 적용하는 방안, 한시적·대상적 구별 적용, 적응지원 제도, 신뢰손해에 대한 배상 등 다양한 경과규정을 선택하여 신뢰보호를 위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화재안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9명(88.1%)이 법률 소급 적용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줌

3) 박경철(2010), “헌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헌법학연구』, v.16(2), p.341.

4) 이부하(2010),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32호, pp.156–158.



### ■ 이슈 3 :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 모든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 및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공익’을 고려하여 의무화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연이어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의 화재취약요인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공익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가 부과되는 건축물의 범위 설정이 필요함

## 4 법·제도적 검토 및 대안 제시

### ■ 법·제도적 대안 검토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응 및 법적 체계성<sup>5)</sup>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건축법」개정, 특별법 또는 신규 법률 제정의 측면에서 검토
- 「건축법」 개정)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완료된 경우 건축기준 준수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새로이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법령의 구성 요건인 체계성의 관점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됨
- (특별법 제정) 일본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진에 대비한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한 것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건축법」 개정보다 법적 체계성 관점에서 유리하며,

5) 박영도(1997),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p.46.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 추진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해 및 재난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 법률 제정) 건축물 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재해·재난 및 생활 수준과 기술 수준의 향상에 따른 요구 성능 또는 기준의 상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
  - 지진이나 화재 등 특정 요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재해·재난 전반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성능을 점검하도록 하고, 성능 점검 결과에 따라 보강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 소급입법 및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형별불소급의 원칙과 달리 중대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급적인 재산권의 박탈 가능(현재 2011.3.31., 2008현바141)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개선의 필요가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다른 수단과 비교하여 적절하다는 점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지원 내지 세재혜택 등 피해 최소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입법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화재안전성능 보강 유도 및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등 지원정책 마련

- 건축물의 사용자 특성과 화재안전성능 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높고,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보강 대상 건축물 유형을 선정하여 재산권 침해 최소화
  -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은 5년간 화재통계(2010~2014)에서 건축물 용도, 사용자 수, 재산피해액 등을 분석하고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어려운 사용자(피난약자) 특성 및 건축물의 화재취약요인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TF’<sup>6)</sup>를 운영하여 화재취약요인으로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가연성 외단열 공법 사용, 스프링 클러 미설치, 피난약자 이용시설로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도출하였으며,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 등 불특정 다수이용시설

---

6) 화재안전 관련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TF’를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0차례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하였음

가운데 3층 이상 건축물로서 시설별 화재취약요인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화재 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로 도출하였음

####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분류	세부용도 (3층 이상 건축물)	화재취약요인			비고
		가연성 외단열 공법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시설	●	●		무관
	노유자시설	●	●		
	제1종근생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원	●	●	
다중이용업소	산후조리원	●	●	●	연면적 1,000㎡ 이하
	목욕장업	●	●	●	
	학원	●	●	●	
	고시원	●	●	●	

- 소급입법 금지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를 최소화하고 개인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 보강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및 응자사업 등 한시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통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추진
  -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여 특정 기간 내(2~3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함
  - 화재취약요인(가연성 외단열 공법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모두 해당하는 연립·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기금을 활용한 응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기간 이후(2~3년) 또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칭)건축물 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및 화재 안전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함

## 5 향후 정책 추진 과제

### ■ 입법에 따른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마련

- 「(가칭)건축물 관리법」의 입법이 추진 중에 있으며, 법률에서 명시한 사항을 시행령 및 규칙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령 위계에 적합하고, 내용적 완결성을 갖추도록 하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시행을 위해 계획, 사업, 조직 체계와 세부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절차를 마련
- 계획이나 사업의 집행을 위한 행정운영체계, 절차, 조직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실행력과 담당 조직의 집행력을 제고
- 재정 보조, 세금 감면 등 유사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재정지원 프로그램 구체화

###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지역 거점 마련

-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강공법의 선택, 보강비용 산출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이 중요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할 수 있으나 현재 설립·운영 실적은 저조한 상황

### ■ 건축물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방안 마련

-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전 설치, 건축물 피난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관리·보강될 수 있도록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유광률** 선임연구위원 (044-417-9649, khyu@auri.re.kr)

**이종민** 부연구위원 (044-417-9697, leejm@auri.re.kr)

**이민경** 부연구위원 (044-417-9836, mklee@auri.re.kr)



관련 보고서 원문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박소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7 [www.auri.re.kr](http://www.auri.re.kr)

